서울고법 원세훈 사건 보고(7. 18. 재판)

1. 개요

▣ 2016. 7. 18.(월) 10:00 ~ 12:00, 14:00 ~ 16:00 서관 404호 법정

▣ 재판부: 김○○ 부장판사(19기), 구○○(26기), 최○○(30기) 고법판사

▣ 검사: 김○○ 부장검사(○○지검 ○○지청, 30기), 이○○(○○지검, 32기), 단○○(○○지검, 32기)

▣ 법정 참관 국회의원: 박주민, 표창원, 진선미, 박범계, 이재정

- 박범계 의원만 법사위임
- 더불어 민주당 당내 설치된 기구인 『민주주의회복 TF』 구성원임
  - 팀장: 박범계, 위원: 표창원, 금태섭, 김병기, 박주민, 백혜련, 이재정, 진선미
  - 밑줄 의원은 법사위 의원임

▣ 기자: 뉴시스 강○○, 연합뉴스 황○○, KBS 홍○○, 동아일보 권○○, 뉴스1 안○○ 등

▣ 기타 다수의 국회의원 보좌관 등 참관

2. 오전 재판: 10:00 ~ 12:00

▣ 재판 시작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법정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음

▣ 재판 시작 후 법정 참관 국회의원들은 법정 방청석 맨 앞에 앉아서 법정을 방청함

- 박범계 의원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함

▣ ① 검사(김○○ ⇨ 이○○ 순)가 재판장 석명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

한 다음 그 주요 내용을 PT를 이용하여 설명(약 11시 30분까지)

- 주로 국정원 트위터 계정 관리에 대하여 제3자 등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형태, 국정원 업무 형태, 피고인 원세훈 등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국정원에서 사용하였고, 단순히 제3자와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, 범죄 공모 범위에 들어간다는 취지임
- 국회의원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석명사항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피고인 원세훈의 발언(종북좌파가 다시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) 등 다수의 관련자 진술 중 일부를 거시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하였음
- 국회의원 보좌관,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음
-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, 진선미, 박범계 의원은 퇴정

▣ ② 약 11시 30분 무렵, 검사의 PT 설명을 중단시키고, 재판장이 해당 석명에 대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의 석명(안보5팀이 신설되기 전인 2011년 이전부터 트위터 계정이 존재하였는데, 그 경우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)에 대하여 이야기함

- 이에 대하여 검사는 지금까지 이런 절차 운영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검사와 재판장 간의 설전이 벌어짐

  - 김○○ 부장검사보다는 이○○, 단○○ 검사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함

- 검사 측은 공판준비기일도 아니고, 석명을 요구하여 석명을 하면 이를 중단시키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하는 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유감 표명
- 다른 내용의 석명에 대하여도 기회를 주면 다시 설명하겠지만, 차라리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쟁점을 정리한 다음 진행하자는 이야기도 함
- 나아가 지금 진행하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석명에 대하여는 재판부도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질의까지 하여,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재판장은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함

▣ ③ 이 과정에서 남아 있던 의원들이 재판을 관심있게 지켜보기 시작하였고, 그 중 이재정 의원은 일어난 다음 법정 뒤에서 서 있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

▣ ④ 다시 재판장이 추가 석명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록 제시(실물화상기를 통하여)하면서 설명하면서 오전 재판을 마무리함

- 재판장과 검사 간의 설전 과정에서 피고인 원세훈, 이○○, 민○○ 및 그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앉아 있었음

3. 오후 재판: 14:00 ~ 16:00

▣ 오후 재판에는 국회의원, 보좌관 등이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채, 뉴시스 강○○ 기자 등 일부 기자만 법정에 있었음

▣ ① 약 14:40까지, 검찰에서 오전 재판에서 진행 중 중단되었던 PT 설명을 계속 진행함

▣ ② 약 16:00까지, 피고인 민○○의 변호인(법무법인 태평양)이 검찰의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

- 피고인 원세훈의 변호인은 그 전 기일에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변론을 하였다고 함
- 피고인 민○○의 변호인은 검찰의 당해 기일 PT 설명에 국한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이야기하였음

▣ 오후 재판에서는 재판장과 검사 간의 특별한 설전은 없었다고 함